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순 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3-94
------------	---------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김순옥, 박주선, 최세진,
홍재희, 김지수, 고찬양,
김현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 2021년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청년에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 사용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과 보호·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이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자립준비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기준에 근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을 명시함. (안 제5조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아동복지법」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 아동청소년과

다. 입법예고 : 2023. 8. 28. ~ 9.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
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대상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사업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
·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102~103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안 제5조제7항(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대상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지원사업」 추진 근거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강서구 자립준비청년 수 증가 예측

(단위: 명)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전체 자립준비청년 수	140명	170명	200명	230명	260명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수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60,000	72,000	84,000	96,000	108,000	420,0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산출내용	금액(천원)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100천원 X 50명 X 12개월 = 60,000천원 (100천원 X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수 X 12개월)	60,000

5. 재원조달 방안: 전액 구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 아동보호팀장: 김의진 / 담당: 사회복지9급 김영록 ☎5493】